

2016.10.31

##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안내

### 1. 개정 이유

2015년 WTO 각료회의에서 정보기술제품 무역확대에 관한 각료선언문(the Declaration on the Expansion of Trade in Information Technology)에 대한 국내이행과 수출확대를 통한 대외무역 증진을 위하여 **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정보기술제품에 적용되는 관세율을 즉시철폐 또는 단계적으로 인하**하기 위하여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의 일부개정령 입법 예고가 발표**되었습니다.

### 2. 주요 내용

WTO의 정보기술제품 무역확대에 관한 각료선언문에 따라 **정보기술 제품에 부과되는 관세율**에 대하여 세계무역기구협정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 부속서 1가 중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 대한 마라케쉬 의정서에 부속된 대한민국 양허표 개정안에 따라 **즉시철폐 또는 단계적으로 인하**하기 위하여 **"별표1의 다"를 신설**하였습니다.

2016.10.31

##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안내

### 3. 의견 제출

✓ **제출처 :**

- 1)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 제출
- 2) 하기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제출

✓ **의견서 기재사항 :**

- 1)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0  
정부세종청사 4동 기획재정부 관세협력과
- 전화 : 044-215-4453
- 팩스 : 044-215-8078
- 이메일 : [cyh3579@korea.kr](mailto:cyh3579@korea.kr)

✓ **제출 기한 : 2016. 11. 7**

2016.10.31

##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안내

### 4. 참고 사이트

\* 세계무역기구협정관세규정 별표 1의 다 (입법안):

<http://www.lawmaking.go.kr/file/download/6920291/1NFHIF09ZR16FLEC0W5Z>

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사 항
의 결	2016. . .	
연 월 일	(제 회)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제출 연월일	2016. . .

법제처 심사 전

##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15년 12월 18일 WTO 각료회의에서 정보기술제품 무역확대에 관한 각료선언문(the Declaration on the Expansion of Trade in Information Technology)에 대한 국내이행과 수출확대를 통한 대외무역 증진을 위하여 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정보기술제품에 적용되는 관세율을 즉시철폐 또는 단계적으로 인하하기 위함

## 2. 주요내용

WTO의 정보기술제품 무역확대에 관한 각료선언문에 따라 정보기술 제품에 부과되는 관세율에 대하여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 부속서 1가 중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 대한 마라케쉬 의정서에 부속된 대한민국 양허표 개정안에 따라 즉시철폐 또는 단계적으로 인하하기 위하여 “별표 1의 다”를 신설하려는 것임.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6. . . ~ . .)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대통령령 제            호

###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일부 개정령안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세계무역기구협정 일반양허관세)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 대한 마라케쉬 의정서에 따라 세계무역기구회원국에 대하여 적용할 일반양허관세는 별표 1의 가부터 별표 1의 다까지에 따른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정안
<p><b>제2조(세계무역기구협정 일반양허관세)</b>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에 대한 마라케시 의정서」에 따라 세계무역기구회원국에 대하여 적용할 일반양허관세는 별표 1의 가 및 별표 1의 나에 따른다.</p>	<p><b>제2조(세계무역기구협정 일반양허관세)</b>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에 대한 마라케쉬 의정서」에 따라 세계무역기구회원국에 대하여 적용할 일반양허관세는 “별표 1의 가” 부터 “별표 1의 다” 까지로 한다.</p>

< 의안 소관 부서명 >

기획재정부 세제실 관세협력과	
연 락 처	(044) 215 - 4453